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2172 발의연월일 : 2021년 1월 25일

발 의 자 : 방미숙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 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- 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년 1월 25일 ~ 2월 1일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6. 부서협의 결과 : 안전정책과

- 부서검토의견 : 예산 등 제반사항 준비기간이 필요한 바, "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" 로 수정 필요

☞ 반영

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현역병"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을 말한다.
 - 2. "사회복무요원"이란 「병역법」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, 보건·의료, 교육·문화, 환경·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입영"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(徵集)·소집(召集) 또는 지원(志願)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.
 - 4. "입영지원금"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- 제3조(입영지원금 지급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 병역의 무 이행 격려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정한다.
- 제4조(지급대상)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(신청일)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.
- 제5조(신청·지급절차)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, 시장은 입 영지원금을 입영(소집)자에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 게 전화,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,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.
- **제6조(환수조치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 - 1.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
 - 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
제7조(사업시행)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